

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(제73조제1항 관련)

보고자와 보고사항	서식	보고받는 자	보고기한
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가. 거래상황 기록부 나. 안전관리현황 기록부	1) 별지 제54호 서식 2) 별지 제55호 서식	영 제22조제 1항제1호의 액화석유가 스 충전사업 자단체	매 분기 다음 달 15일
2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(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만을 말한다) 가. 거래상황 기록부 나. 시설개선현황 기록부	1) 별지 제56호 서식 2) 별지 제57호 서식	영 제22조제 1항제3호의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업 자단체	매 분기 다음 달 15일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및 판매 사업자단체는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(시·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말한다) 및 한국가스안전 공사 사장(안전관리현황 기록부와 시설개선현황 기록부만을 말한다)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대해서는 「한국석유공사 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도 알려야 한다.			

비고

- 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
업자단체 또는 판매사업자단체에 보고를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
수 있다.
- 2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
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보고사항 중
거래상황 기록부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.